



제 2 편

학 칙

학 칙
학사내규

학 칙

(개정 2018. 05. 23. 대학평의원회 2018. 05. 21.)
(개정 2017. 10. 18. 대학평의원회 2017. 11. 07.)
(개정 2017. 09. 28. 대학평의원회 2017. 09. 27.)
(개정 2017. 08. 07. 대학평의원 회 2017. 08. 04.)
(개정 2017. 06. 20. 대학평의원회 2017. 06. 19.)
(개정 2017. 03. 07. 대학평의원회 2017. 03. 06.)
(개정 2016. 12. 09. 대학평의원회 2016. 12. 05.)
(개정 2016. 08. 16. 대학평의원회 2016. 08. 11.)
(개정 2016. 04. 27. 대학평의원회 2016. 04. 27.)
(개정 2016. 02. 29. 대학평의원회 2016. 02. 29.)
(개정 2015. 10. 06. 대학평의원회 2015. 09. 30.)
(개정 2015. 08. 19. 대학평의원회 2015. 08. 13.)
(개정 2015. 06. 29. 대학평의원회 2015. 06. 23.)
(개정 2015. 05. 04. 대학평의원회 2015. 04. 27.)
(개정 2014. 12. 01. 대학평의원회 2014. 11. 28.)
(개정 2014. 09. 30. 대학평의원회 2014. 09. 30.)
(개정 2014. 09. 12. 대학평의원회 2014. 09. 05.)
(개정 2014. 07. 31. 대학평의원회 2014. 07. 29.)
(개정 2014. 04. 30. 대학평의원회 2014. 04. 23.)
(개정 2013. 08. 27. 대학평의원회 2013. 08. 21.)
(개정 2013. 02. 21. 대학평의원회 2013. 02. 18.)
(개정 2012. 07. 26. 대학평의원회 2012. 07. 25.)
(개정 2012. 06. 27. 대학평의원회 2012. 06. 25.)
(개정 2012. 03. 07. 대학평의원회 2012. 03. 05.)
(개정 2012. 02. 03. 대학평의원회 2012. 02. 03.)
(개정 2011. 10. 25. 대학평의원회 2011. 10. 21.)
(개정 2011. 08. 29. 대학평의원회 2011. 08. 26.)
(개정 2011. 06. 14. 대학평의원회 2011. 06. 13.)
(개정 2011. 03. 09. 대학평의원회 2011. 03. 09.)
(개정 2011. 01. 18. 대학평의원회 2011. 01. 18.)
(개정 2010. 12. 28. 대학평의원회 2010. 12. 20.)
(개정 2010. 11. 25. 대학평의원회 2010. 11. 18.)

(개정 2010. 10. 21. 대학평의원회 2010. 10. 12.)
(개정 2010. 09. 13. 대학평의원회 2010. 09. 09.)
(개정 2010. 05. 08. 대학평의원회 2010. 04. 23.)
(개정 2010. 02. 26. 대학평의원회 2010. 02. 25.)
(개정 2009. 12. 22. 대학평의원회 2009. 12. 22.)
(개정 2009. 10. 21. 대학평의원회 2009. 10. 16.)
(개정 2009. 04. 01. 대학평의원회 2009. 03. 31.)
(개정 2009. 03. 01. 대학평의원회 2009. 02. 03.)
(개정 2008. 03. 01. 대학평의원회 2008. 03. 19.)
(개정 2007. 03. 01. 대학평의원회 2007. 03.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03〉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서라벌대학교이라 한다.〈개정 2012.02.03〉

제3조(위치) 본 대학교는 경주시 태종로 516에 둔다.〈개정 2012.02.03, 2014.07.31〉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이하에서 '학과'를 말할 때는 '학부'를 포함한다)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6, 2006.2.16, 2012.02.03〉

제4조의 2(학과 및 전공의 폐지) ①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한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과의 폐지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한한다. 학부 및 학과(전공)의 유지를 위한 정원의 최소단위는 당해 연도 신입생 모집정원으로 하며, 정원은 정원 내의 인원을 말한다. 다만, 총장은 학부 및 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수 및 보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의 최소모집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0.05.08, 개정 2010.09.13〉

1.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의 30%이상의 미달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해당 학과 및 전공 소속 교원들에게 경고조치하고, 2년 연속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 및 전공을 폐지한다.〈개정 2010.09.13〉

2.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의 40%이상의 미달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과는 당

- 해 연도부터 폐지하고, 학부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말 전공분류 후 최소모집정원의 40%이상의 미달이 발생한 전공은 1학년 2학기부터 폐지한다. <개정 2010.09.13>
- ③ 폐지된 학과 및 전공의 복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학과 및 전공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항 이동 2010.05.08>
- ④ 학과 및 전공의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 10.21. 개정 2010.05.08>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되,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는 3년으로 하며,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개정 2005.2.16, 2006.2.16, 2008.3.19, 2009.12.22., 2012.02.03., 2017.06.20.>
-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8조(학기)** ① 학기는 1년 2학기제로 나누고 학기별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2.16, 2009.3.1>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② 2학년에서는 한 학기 이상을 현장실습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장실습학과와 관련한 학점인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 ③ 학기 개강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에 할 수 있다.<개정 2009.3.1>
-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3.1>
-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3.1>
- ② 천재·지변 및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조 신설 2006.9.1, 개정 2008.3.19, 2015.05.04>
- 제1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국정 공휴일

②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기,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개정 2006.9.1>

제11조(입학시기)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로 하되 편입학과 재입학은 제21조 및 제22조와 같다.<개정 2006.9.1, 2008.3.19, 2015.05.04.>

② 외국인으로서 학력 인정자는 2학기에도 입학이 가능하며 허가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6.9.1, 2009.3.1>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전 각호 1의 해당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 되는 자<개정 2006.9.1>

제13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2. 최종 학교의 성적증명서

3.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출신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다음 각호 중 총장이 정하는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3.1>

1. 대학수학능력시험

2. 대학별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9.3.1〉

제15조(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9.1, 2009.3.1, 2014.07.31〉

제15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5.05.04.〉

제16조(입학허가 및 등록) ① 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06.9.1, 2009.3.1〉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된 날짜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입학취소) 부정 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조 신설 2006.9.1, 개정 2009.3.1〉

제18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19조(외국인유학생) 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의 입학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20조(이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교 학생은 다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개정 2012.02.03〉

제21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 및 폐교 또는 폐과된 학과의 학생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2.16, 2009.3.1, 2010.09.13〉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22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입학정원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소속 학과가 폐과된 경우는 동일

계열 및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6.2.16. 2009.3.1>

②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별 입학정원 대비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③<삭제 2009.12.22>

제 5 장 전 과<개정 2006.9.1>

제23조(전과) ① 교내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기 이상 2학기 이하 이수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3.1, 개정 2009.12.22, 2012.07.26>

② 전과할 수 있는 학과 허용범위 및 전과의 허용 비율은 학과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단, 간호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임상 병리과로서의 전과는 학과의 입학 정원 대비공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개정 2006.2.16, 2009.3.1, 2015.05.04.>

③ 편입생, 산업체 위탁교육생 자격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개정 2006.9.1, 2009.3.1, 2014.12.01.>

④ 전과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과횟수, 전과학년, 학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7.06.20.>

1. 학과(계열)의 모집증지에 따른 전과
2. 휴학생의 복학시 학과(계열)명칭 변경에 따른 전과(명칭 변경 학과로의 전과에 한함)
3. 휴학생의 복학 시 학제 변경에 따른 전과

⑤ 전과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9.1., 2009.3.1., 향이동 2017.06.20.>

제24조(절차) 전과의 세부적인 절차 및 지원자 초과 시의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소속 학과가 폐지된 해당 학과의 재적생은 우선 전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2.07.26>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5조(휴학) ① 질병, 병역 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는 휴학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6.2.16, 2009.3.1>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료인(한의사 포함)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2.16, 2009.3.1>

③ 휴학 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장애학생의 경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질병, 병역의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기간이나 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9.1, 개정 2009.3.1, 2011.03.09, 2011.06.14>

④ 휴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연기 1회는 휴학 1회로 본다.<신설 2006.9.1, 개정 2009.3.1>

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⑥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산업체 위탁교육모집생의 휴·복학은 특성상 불가능하나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산업체장의 동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6.2.16, 개정 2009.3.1.>

⑧ 부모학생이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학 요청 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신설 2016.12.09.>

제26조(복학)<조 신설 2006.9.1>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③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27조(자퇴) 자퇴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제28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09.3.1>

1. 휴학기간 종료 후 매학기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6.2.16, 2009.3.1>
2. 품행이 불량하고 학업수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다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 7 장 교과, 수업 및 학점

제2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일반선택,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 직업기초능력교과

로 구분한다. 단, 조기졸업을 위한 조기졸업 코스교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09.3.1, 2015.05.04.>

② 교육과정의 교과목편성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학과별 최소 1개 이상 영역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15.05.04, 2016.02.29>

③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3.19>

④ 현장실습(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을 의무적으로 하는 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로 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23.>

⑤ 국가가 지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필수 교과과정을 둘 수 있다.

⑥<삭제 2009.3.1>

⑦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5.04.>

⑧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NCS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5.05.04., 개정 2017.06.20.>

⑨ 첨단정보통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기법을 통한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에 의한'수업(e-Learning)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5.04.>

⑩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08.16.>

⑪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 실무능력 및 리더십 배양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08.07.>

제30조(교육과정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3.19>

② 기타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31조(교과이수단위 및 학점이수)<개정 2007.3.15>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16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6.2.16, 2009.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 코스교과에서 매 학기 3학점 이내 이수할 수 있다.

④<삭제 2009.3.1>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학점 이하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6.2.16, 2009.3.1, 2009.12.22, 2011.03.09>

⑥<삭제 2009.3.1>

⑦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개설 학기별 최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학과의 실습특성, 산업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 품질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신청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06.2.16., 2010.09.13., 2016.08.16.>

⑧ 제 29조 4항에 의한 현장실습학점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05.23.>

제32조(수업) ① 매 학기의 개설 교육과정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② 수업 시간은 08:00부터 23:00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일 때, 해당과목을 폐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5.2.16, 2009.3.1>

④ 교과목 성격상 필요에 따라 수업을 원격교육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⑤ 이론과목은 40명 이상, 실습과목은 30명 이상 시 분반이 가능하다. 단,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학과 특성 및 강의실 배분과 관련하여 부득이 30명 미만 분반 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개설한다.<신설 2016.02.29>

제33조(강의시간표) 강의시간표는 전조의 개설교육과정에 따라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조 신설 2006.9.1, 개정 2009.3.1>

제3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2일 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06. 9.1, 개정 2011.03.09>

②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③ 수강 신청자가 일정 수 이하인 과목은 폐강 할 수 있다.

제35조(재이수 및 성적포기) 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이미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재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7.06.20.>

②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A⁰등급까지만 취득가능하다.<개정 2017.06.20.>

③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포기할 수 없으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과 기존 취득한 성적을 모두 성적증명서에 기재하고, 평균평점에 반영한다.<개정 2006.2.16, 2008.3.19, 2009.3.1, 2012.02.03., 2016.02.29., 2017.06.20.>

제36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3.19, 2015.05.04.>

②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37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3.19, 2009.3.1, 2012.02.03, 2014.04.30>

- ② 총장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강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
- ③ 시수의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 8 장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제38조(비정규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2.03>

② 비정규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개정 2012.02.03>

③ 비정규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08.3.19, 2009.3.1, 2015.05.04.>

제39조(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전공 분야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비학위 과정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2.03>

② 수업연한은 1년 범위 이내로 하되 각 과정별 연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③ 본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이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39조 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04.30>

제39조 3(계약학과 명칭 및 정원) ① 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은 [별표5]와 같다.<신설 2014.04.30>

② 채용조건형의 계약학과는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04.30>

③ 재교육형의 계약학과는 당해 학년의 학생정원은 교육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신설 2014.04.30>

제39조 4(계약학과 학생선발) ①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특별전형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른다.<신설 2014.04.30>

②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신설 2014.04.30>

제39조 5(계약학과 편성·운영)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 및 제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

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04.30>

제39조 6(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해당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는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체 부담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액 부담 할 수 있다.<신설 2014.04.30., 개정 2015.05.04., 2017.03.07.>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 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학과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04.30>

③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 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4.04.30>

제39조 7(등록금) ①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04.30>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에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2014.04.30>

제39조 8(계약학과 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학기제 또는 쿼터제로 운영한다.<신설 2014.04.30>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단,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업일수 및 학기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4.04.30>

③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에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04.30>

④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신설 2014.04.30>

제39조 9(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계약학과에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신설 2014.04.30>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학생의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4.04.30.>

제39조 10(계약학과 휴학 및 복학)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신설 2017.06.20.>

제40조(시간제등록생 운영) ①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생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2.03>

- ② 시간제 등록생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③ 선발 인원은 당해년도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2.03.07, 2016.02.29>
- ④ 시간제등록생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성적 등으로 선발하며 구체적 시행은 모집 시기에 공고한다.
- ⑤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정규과정 학생과 통합 운영한다.
- ⑥ 시간제등록생의 최대 신청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계절수업 포함) 이하로 하되,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8.19>
- ⑦ 기타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적 운영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41조(학점은행제운영) ① 본 대학교 및 본 대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학점이 누적되면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이 가능하다.<개정 2012.02.03>

- ② 기타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42조(공개강좌의 운영) ① 교양,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 강좌의 과목, 기간, 장소, 수강지역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 9 장 성적평가

제43조(시험) ①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 ② 각 교과목별 총 수업 시간수의 1/4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3.1>

- ③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1.03.09>

- ④ NCS기반 교과목은 진단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중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05.04., 개정 2017.06.20., 2018.05.23.>

- ⑤ e-Learning 교과목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5.04.〉

제44조(성적) ①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취득 인정은 D 등급 이상으로 하되,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S"(합격), "U"(불합격)로 평가한다. 〈개정 2006.2.16, 2009.3.1〉

〈학업성적 분류표〉

등 급	배 점	평 점
A ⁺	100 - 95	4.5
A ^o	94 - 90	4.0
B ⁺	89 - 85	3.5
B ^o	84 - 80	3.0
C ⁺	79 - 75	2.5
C ^o	74 - 70	2.0
D ⁺	69 - 65	1.5
D ^o	64 - 60	1.0
F	59이하	0
S		불계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평가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9〉

⑤ 성적 배점별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⑥ 등급이 F일 경우 기 취득한 실점수는 인정한다. 다만, 출석미달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신설 2009.3.1〉

⑦ 장애학생의 평가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한다.〈신설 2011.01.18〉

⑧ NCS기반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진단평가, 출석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재평가 가점 등을 종합평가한다.〈신설 2015.05.04., 개정 2016.12.09., 2018.05.23.〉

제45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03〉

② 고등학교와 연계교육이수 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1〉

③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우 학점 당 4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09.13>

④ 다른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및 실습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인정을 통하여 최대 18학점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선행학습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2.16, 개정 2014.12.01, 2015.08.19>

⑤ 교육부의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한 학생은 1학기에 한하여 20학점 내외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8.3.18, 개정 2010.09.13, 2011.10.25, 2015.05.04.>

⑥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평가 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경우 한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신설 2009.12.22, 개정 2014.12.01.>

⑦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08.19>

⑧ 본교 「평생직업교육대학」에서 개설된 학점인정 교육과정 중 교양과목 및 학과 지정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요청이 될 경우 필요 절차에 의거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08.19>

⑨ 본교 및 협약기관(대학)에서 개설된 강좌 중 해당학기 지정과목에 대한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그 취득 범위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08.19>

⑩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항 이동 2010.09.13, 2015.08.19.>

제45조의2(조기취업자 학점인정) ① 본 대학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 국내·외 산업체에 조기 취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 학점인정기준을 적용하여 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6.12.09.>

②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2.09.>

제46조(특별학점인정)<조 신설 2005.2.16> 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특별학점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특별학점의 인정은 2학점 이내로 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47조(진급인원) 2, 3,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2018.05.23.)

제48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49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해야 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 10 장 졸업 및 수료

제50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은 4년제 학과는 140학점, 3년제 학과는 120학점, 2년제 학과는 80학점으로 한다.〈개정 2017.0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전공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1과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7.06.20.〉

③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⑤ 졸업예정자의 졸업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7.09.28.〉

제51조(졸업시험) ①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 졸업 시험을 실시할 경우 탈락자에게는 반드시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졸업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52조(수료)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하지 못한 자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개정 2017.06.20.〉

제53조(유급) 수업연한 동안 수료 및 졸업 최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유급 되며, 유급자는 미달 학점을 이수 한 후 졸업 할 수 있다.〈조 신설 2006.9.1〉

제54조(수업연한의 단축) ① 총장은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기에 졸업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② 위 1항의 수업연한의 단축은 제53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1/4로 한다.

제55조(이수증) 특별과정 또는 각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제56조(봉사활동) ① 재학생은 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03.09〉

② 봉사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 11 장 학생 활동

제57조(학생회) ①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 및 학생의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라벌대학교 학생회칙에 따른다.〈개정 2009.10.21, 2012.02.03, 2014.07.31., 2014.12.01., 2016.12.09.〉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4.12.01〉

제57조 2(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2.01〉

제58조(학업 및 업무 방해 행위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개정 2009.10.21〉

제59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2009.10.21〉

제60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단체를 구성하여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61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② 학생회 및 학생단체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10.21, 2014.12.01〉

제62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용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이다.〈개정 2009.3.1〉

1. 승인사항

- 가.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 나.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2. 신고사항

- 가.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 나.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제63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제64조(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시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규율과 상벌

제6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66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전문의료인(한의사 포함)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기취업자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01., 2017.06.20.〉

제67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9.3.1〉

제68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개정 2009.3.1〉

1. 학칙을 위반한 자
2. 이유 없이 4주 이상을 결석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학업수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기타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69조(성희롱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8.3.19, 개정 2009.3.1., 2012.02.03., 2016.12.09.〉

제 13 장 장 학 금

제70조(장학금) ① 총장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1. 학업성적이 평균 B⁰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⁰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③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④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특별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개정 2009.3.1>

제 14 장 등 록 금

제71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금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2.16, 2009.3.1>

② 실험 또는 실습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3.19, 2015.05.04>

③ 조기졸업코스교과의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④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수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대학에 등록을 하여야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개정 2005.2.16>
4. 10학점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개정 2005.2.16>

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⑥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금 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학점당 등록금은 해당 학과별 학기당 등록금을 20학점으로 나누어 1학점당 등록금으로 계산한다.<신설 2015.08.19>

⑦ 학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항 이동 2015.08.19>

제72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고 한다)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이하 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9.3.1>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및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09.3.1>

③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휴학 중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복학 후 자퇴 자는 휴학일자와 자퇴일자 중 경과일수가 많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3.1>

1.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단, 입학식이 3월 이전인 경우에는 3월 2일) 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

환한다. 다만,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전에 반환신청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 그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신청할 때에는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1/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9.3.1, 2009.12.22>

2. 해당 학기 개시일의 다음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05.2.16, 2006.9.1, 2008.3.19, 2009.3.1, 2009.12.22>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매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매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매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매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73조(등록금의 감면)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6.12.09.>

②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 15 장 대학평의원회<신설 2009.3.1>

제74조(대학평의원회) 본 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3.1, 개정 2012.02.03>

제 16 장 교수회<개정 2006.9.1, 2009.3.1>

제75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9.12.22, 2012.02.03>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조 이동 2009.3.1〉

제 17 장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신설 2009.3.1〉

제76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2.03〉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2.26〉

③ 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조 신설 2009.3.1〉

제77조(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07.31., 2017.03.07.〉

1. 학(부)과 및 부속·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졸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교육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4.07.31.〉
6. 교육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03.07.〉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호이동 2017.03.07.〉

〈조 신설 2009.3.1〉

제78조(제 위원회) 대학행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총장의 자문과 각 부서 및 개별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9.1, 2009.3.1〉

제7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1.01.18, 개정 2012.02.03〉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01.18〉

제 18 장 직 제<장 이동 2009.3.1>

제79조(직제) ① 본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 기획처, 사무처를 둔다.<개정 2009.3.1, 2009.12.22, 2010.12.28., 2012.02.03, 2013.02.21, 2014.09.30., 2017.10.18.>

② 총장 직속으로 특성화사업단, 입학홍보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14.07.31>

③ 세부직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9.1, 2009.3.1>

제80조(부속·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원, 대학언론사, 학생생활관, 보건실 및 기타 필요한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2009.3.1, 2012.02.03, 2014.07.31>

② <삭제 2014.07.31>

③ 본 대학교에 부설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장례지도사교육원 및 기타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9.3.1, 2012.02.03, 2013.02.21, 2014.07.31, 2015.06.29>

④ 본 대학교에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 및 부속시설을 둔다.<신설 2011.01.18, 개정 2012.02.03>

1.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2. 장애학생지원센터

⑤ 부속·부설기관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향 이동 2011.01.18>

<조 이동 2005.2.16, 2009.3.1>

제81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두며,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2016.12.09.>

② 산학협력단에 연구기관을 두며,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2013.8.27, 2014.07.31>

<조 이동 2009.3.1>

제 19 장 학교기업<장 이동 2009.3.1>

제82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 학교기업을 둔다.<개정 2012.02.03>

② 학교기업은 본 대학교(경북 경주시 태종로 516)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주시내에 둘 수 있다.<개정 2012.02.03>

③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및 연계되는 학부, 학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

다.<조 신설 2004.8.10, 조 이동 2009.3.1, 개정 2014.04.30>

제83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3년제 학과는 총 30학점, 2년제 학과는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4.1>

②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기준은 정규 교과목의 학점인정시간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4.8.10, 조 이동 2009.3.1>

제84조(보상금의 지급) ① 학교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당해연도 순수익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교직원 및 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액은 순수익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04.8.10, 조 이동 2009.3.1, 개정 2015.05.04.>

제 20 장 대학교 교·직원

<신설 2009.12.22, 개정 2012.02.03>

제85조(대학교 교·직원) 대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단, 대학교의 장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사,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한다.<신설 2009.12.22, 개정 2012.02.03>

제85조의2(교원의 재계약·재임용) 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 2를 준용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05.08>

제85조의3(교원의 평가) 교원에 대한 평가 및 경과조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05.08>

제 21 장 보 칙<장 이동 2009.3.1 2009.12.22>

제86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조 이동 2009.12.22, 개정 2009.3.1>

제87조(학칙변경) <조 이동 2009.3.1, 2009.12.22>

- ①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은 개정안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9.1, 2009.3.1>
- ② 개정안을 제출받은 주관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1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공고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09.12.22, 2010.05.08>
- ③ 본 대학교의 교직원 등은 공고된 변경 안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2.02.03>
- ④ 학칙개정안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개정 2009.3.1>

제88조(제 규정 제정 및 개·폐) 학칙 외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신설 2009.10.21, 조 이동 2009.12.22>

제89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0.21, 조 이동 2009.12.22.>

제90조(교육품질관리) ① 본 대학은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여야한다.<신설 2017.06.20.>
 ②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6.20.>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4학년도 말까지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 과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학과 및 졸업정원 변경인가

경주실업전문대학

과 명	현 행	변 경	비 고
관광일어과		40	신설
유아교육과	80	120	증40
응용미술과	80	40	감40
관광영어과	80	40	명칭변경 및 감40(영어과)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5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8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6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학과 및 졸업정원 변경인가 내용

경주실업전문대학

과 명	현 행	변 경	비 고
간 호	40	80	증40
경 영	80	40	감40
관광영어통역	40	40	명칭변경(관광영어)
관광일어통역	40	40	명칭변경(관광일어)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 및 졸업정원 변경인가 내용

경주실업전문대학

과 명	졸업 정 원		비 고
	현행('87학년도 : '86입학)	변경('88학년도 : '87입학)	
전자계산	_____	80	신설
관광	120	80	감40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 감축학과와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와 졸업정원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 과	졸업 정원	적용 학년도		비 고
		부터	까지	
관 광	120	1988	1991	
관광영어통역 (관광영어)	80	1986	1988	'86학년도 과명칭변경: 관광영어 관광영어통역
세 무 회 계	80	1986	1989	
경 영	80	1987	1990	
민 속 공 예 (응용미술)	80	1986	1988	'86학년도 과명칭 변경: 응용미술 민속공예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간호과의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 하는 자에 대한 입학정원의 학생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의2, 제27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경주실업전문대학생은 변경 학칙에 의한 경주전문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경주실업전문대학 소속 교직원은 변경학칙에 의한 경주전문대학의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당시 섬유디자인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 22조(교육과정) 제1항 및 제24조(교과 이수단위) 1항의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휴학 후 복

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복학 당시의 교육 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22조(교육과정) 제1항 및 제24조(교과이수단위) 제1항의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 하지 못하는 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조 전기·전자·전산계열의 명칭은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전기·전자·전산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주관광대학의 학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전문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주관광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관광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서라벌대학의 학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관광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서라벌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4조의 산업정보계열의 명칭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산업정보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계열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2.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22조(교육과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999학년도 (간호과는 200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조의 관광계열, 디자인영상계열, 환경시스템공학과, 건축조형계열의 명칭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기존 학과 학생은 개정된 학과 및 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개정된 학과 및 계열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 관광학부, 세무정보과, 인터넷비즈니스과, 경찰복지행정과, 패션디자인과, 사진영상과, 실내디자인과, 경호레저스포츠과, 산업디자인과, 전기전자전산학부, 환경과학과, 건축과의 명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기존 계열 및 학과 학생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계열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 국제관광학부, 세무정보과, 유아교육과, 뷰티코디네이션학부, 관광호텔조리과, 영상미디어과, 산업디자인 과,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전기시스템과, 환경과학과의 정원 및 명칭변경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기존 학부 및 학과 학생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의 학생(유아교육과 기존 학생은 2년제 적용)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 국제관광학부, 비즈니스경영학부, 유아교육과, 생명보건학부, 뷰티코디네이션학부, 관광호텔조리과, 디자인미술영상학부, 경호레저스포츠학부, 컴퓨터미디어학부, 디지털전기정보학부, 자동차기계학부, 건축·실내디자인학부의 정원 및 명칭변경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기존 학부 및 학과 학생(건축과, 실내디자인학과 기존학생은 2년제 적용)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 국제관광학부, 비즈니스경영학부, 유아교육과, 아동미술보육과, 생명보건학부, 뷰티코디네이션학부(메이크업·네일아트전공) 관광호텔조리과, 음악과, 애니메이션학부, 경호스포츠학부, 멀티미디어학부, 자동차기계학부, 토탈디자인학부의 정원 및 명칭변경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기존 학부 및 학과 학생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 국제관광학부, 부동산세무과, 창업경영과, 간호과, 보건행정과, 애완동물보건학부, 미용예술과, 관광호텔조리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소자본창업학부, 음악과, 경호스포츠학부, 자동차튜닝과, 멀티미디어과, 건축리모델링과의 정원 및 명칭변경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005학년도 말(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된 학과는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기존 학부 및 학과 학생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개정된 학부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05학년도 입학자가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2006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 ③ 학부(과), 전공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관광학부
: 학부의 각 전공별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학부에서 개별 학과로 분리 및 명칭 변경됨에 따라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관광레저경영전공은 국제관광경영과, 항공서비스전공은 항공서비스과, 카지노전공은 카지노과, 호텔경영전공은 호텔경영과, 관광일어전공은 관광일어과, 중국관광비즈니스전공은 중국관광비즈니스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폐과된 외식사업·이벤트경영 전공의 경우는 호텔경영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복학 시는 국제관광학부에서 분리된 개별 학과 중 선택권을 부여한다.
 2. 부동산세무과
: 부동산세무과의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학과명칭이 변경된 부동산건설팅과의

재적생 으로 본다.

3. 창업경영과

: 폐과된 창업경영과의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경찰복지행정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4. 애완동물보건학부

: 각 전공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애완동물보건관리과 재적생으로 본다.

5. 경호스포츠학부

: 경호스포츠학부의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스포츠재활지도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6. 미용예술과

: 미용예술과의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학과명칭이 변경된 뷰티미용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7. 소자본창업학부

: 학부의 각 전공별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개별 학과로 분리 및 명칭변경됨에 따라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조리창업전공은 기능식품컨설팅과, 피부관리창업전공은 피부관리창업과, 헤어디자인창업전공은 헤어디자인창업과, 장례풍수창업전공은 장례지도과, 풍수명리과, 학과 명칭이 변경된 조리창업전공은 기능식품컨설팅과의 재적생으로본다.<개정 2010.05.08>

8. 멀티미디어과

: 멀티미디어과의 재적생은 2006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전산사무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07학년도 입학자가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08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과), 전공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국비즈니스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국제비즈니스과의 재적생으

로 본다.

2. 경찰복지행정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경찰경호행정과 또는 사회복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애완동물보건관리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반려동물보건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4. 피부미용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뷰티디자인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5. 건축리모델링과 : 학과의 수업연한이 2008학년도부터 2년으로 단축 변경됨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 재학생은 입학당시 학과의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다른 규정의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 ③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08학년도 입학자는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09학년도까지 학부 또는 전공이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부(과), 전공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려동물보건학부 : 학부의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애완동물관리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웰빙테라피과, 헤어디자인과, 뷰티디자인학부 : 각 학부(과)의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웰빙뷰티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3. 다이아몬드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다이아몬드마스터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4. 보건행정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보건의료행정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50조의 별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학위의 종별 변경) 전문학사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풍수명리과의

2007학년도 이학전문학사 및 2008, 2009학년도 문학전문학사는 풍수명리전문학사, 장례서비스경영과의 2008, 2009학년도 장례전문경영학사는 장례경영전문학사로 한다.

③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는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0학년도까지 학부(과) 또는 전공이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부(과), 전공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정비튜닝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자동차기계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관광호텔조리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개별 학과로 분리 및 명칭변경 됨에 따라 2010학년도 1학년 복학 및 2011학년도 이후 복학 시는 국제서양조리과, 실용한식조리과, 베이킹디자인과 중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3. 웰빙뷰티학부 : 학부의 각 전공별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학부에서 개별 학과로 분리 및 명칭변경 됨에 따라 스파테라피전공은 스파테라피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피부미용전공은 2010학년도 1학년 복학 및 2011학년도 이후 복학 시는 피부미용과, 헤어디자인과 중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단, 전공선택 전 휴학한 학생의 2010학년도 1학년 복학 및 2011학년도 이후 복학 시는 스파테라피과, 피부미용과, 헤어디자인과 중 선택권을 부여한다.
4. 호텔경영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호텔관광경영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5. 경찰복지계열 : 계열의 각 전공별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계열에서 개별 학과로 분리 및 명칭변경 됨에 따라 경찰경호행정과는 경찰경호행정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6. 레저스포츠과 : 학과의 재적생은 2010학년도부터 축구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7. 유아교육과 : 학과의 수업연한이 2010학년도부터 2년으로 단축 변경됨에 따라 2009학년도 이전 재적생은 입학당시 학과의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단 2010학년도 이후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되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2년제로의 재입학 시는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한 후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10학년도 입학자는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1학년도까지 학부(과) 또는 전공이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과), 전공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10학년도 입학자는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1학년도까지 학부(과) 또는 전공이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10학년도 입학자는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1학년도까지 학부(과) 또는 전공이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10학년도 입학자는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1학년도까지 학부(과) 또는 전공이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11학년도 입학자는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2학년도까지 학부(과) 또는 전공이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과), 전공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라벌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서라벌대학교의 학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라벌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서라벌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제규정류에서 사용하는 본교의 명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서라벌대학교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공통사항) 학부(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12학년도 입학자는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3학년도까지 학부(과) 또는 전공이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부(과), 전공별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82조, 별표4의 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년제 과정이 4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3

년제 과정으로 입학한자의 수업연한,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개정 2012.02.03., 2017.06.20.>

제 호

학 위 증

과(학부)

성명 :

전공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0 0 0 0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라벌대학교 총 장 0 0 0
0 0 박사 0 0 0

학위등록번호 : 서라벌 - 0000 - 0000

[별지 제2호]〈개정 2012.02.03., 2017.06.20.〉

제 호

학 위 증

과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0 0 0 0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라벌대학교 총 장 0 0 0
0 0 박사

학위등록번호 : 서라벌 - 0000 - 0000

[별지 제2-1호]〈신설 2017.06.20.〉

제 호

학 위 증

과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0 0 0 0 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라벌대학교 총 장 0 0 0
0 0 박사

학위등록번호 : 서라벌 - 학0000 - 0000

[별지 제3호]〈개정 2012.02.03〉

제 호

수료증

과(학부)

성명 :

전공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
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라벌대학교 총장 0 0 0
00 박사

[별표 1] <개정 2005.2.16, 2006.2.16, 2006.9.1, 2007.3.15, 2008.3.19, 2009.3.1, 2009.10.21, 2010.2.26, 2010.09.13, 2010.10.21, 2010.11.25, 2010.12.28, 2011.06.14, 2012.06.27, 2013.08.27, 2014.07.31, 2014.09.12, 2015.10.06., 2016.04.27., 2017.06.20., 2017.10.18.>

학부(과)별 입학정원표

계 열	학부(과), 전공	입 학 정 원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2016 학년도	2015 학년도	2014 학년도	2013 학년도
인 문 사 회	국제관광경영과						
	관광일어과						
	국제비즈니스과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항공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카지노과	20	20	20	25	35	40
	부동산과(야간)						
	프랜차이즈과(주간)						
	프랜차이즈과(야간)						
	부동산 경영계열	부동산컨설팅과					
	경영과						
	부동산컨설팅과						
	경영과						
	사회복지과			20	20	30	30
	사회복지과(야간)	20	20	20	30	45	50
	경찰경호행정과						
	경찰보안과				15	30	30
	경찰부사계열	경찰경호행정과					
	사회복지과						
	부사관과						
	실버산업경영과						
유아교육과		25	25	25	30	40	
유아교육과★							
아동미술보육과							
풍수명리과(야간)							
풍수명리과							
장례서비스경영과	20	20	20	20	30	30	
자 연 과 학	간호학과 ■	60					
	간 호 과 ★		80	80	80	80	80
	작업치료과 ★				-	30	30
	치위생과 ★	40	40	40	40	40	40
	임상병리과 ★			20	25	30	30
	방사선과 ★	20	20	20	20	20	20
	마 사 과	20	20	20	25	40	
	보건에듀케어과						
	운동처방과						
	보건의료 행정과	보건행정전공					
	노인요양재활전공						
	보건행정과						
	애완동물관리과						
반려동물	애견미용전공						

	보건학부	동물간호전공							
		애견훈련전공							
			국제서양조리과						
			퓨전양식조리과						
			실용한식조리과						
			베이킹디자인과						
			호텔외식조리과	20	25	25	25	30	50
			관광호텔조리과						
			피부미용과						
			피부미용스파과(주간)						
			피부미용스파과(야간)						
			헤어디자인과						
			헤어미용복지과						
			스파테라피과						
	웰빙뷰티학부	스파테라피전공							
		피부미용전공							
	뷰티디자인학부	뷰티스타일리스트전공							
피부미용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전공							
		헤어디자인과							
		웰빙테라피과							
		장례서비스경영과							
예·체능		실용음악과							
		음악과							
		축구과							
		레저스포츠과							
		마사과					40		
		팬시완구디자인과							
		스포츠승마과		15	15				
공학		전산사무과							
		고속전기철도과							
		자동차기계과							
		자동차정비튜닝과							
		건축리모델링과							
		다이아몬드마스터과							
	주얼리디자인계열	보석귀금속디자인과							
		다이아몬드과							
		조선플랜트과							
		제철산업플랜트과							
		환경공업과							
	주문식특약계열	조선기술과							
		조선플랜트과							
		환경플랜트과							
		산업플랜트경영과							
국제기술과									
	종합군수지원과								
	방산장비정비과								
	그린산업기술과(주간)				25				
	그린산업기술과(야간)								
	기계시스템과	15	18	18					
	합 계	235	288	343	390	470	510		

※ ■표는 4년제, ★표는 3년제 임

계 열	학부(과), 전공	입 학 정 원					
		2012 학년도	2011 학년도	2010 학년도	2009 학년도	2008 학년도	
인 문 사 회	국제관광경영과				40	40	
	관광일어과			40	70	40	
	국제비즈니스과					30	
	호텔관광경영과	40	40	40			
	호텔경영과				70	50	
	항공관광과		10	30			
	항공서비스과				40	30	
	카지노과	40	40	40	50	40	
	부동산과(야간)		40	30			
	프랜차이즈과(주간)		10				
	프랜차이즈과(야간)		10				
	부동산 경영계열	부동산컨설팅과				90	
		경영과					
		부동산컨설팅과					40
		경영과					30
		사회복지과	40	40	30		
		사회복지과(야간)	50	50	50		
		경찰경호행정과			40		
		경찰보안과	30				
	경찰부 계열	경찰경호행정과				150	130
		사회복지과					
		부서관과		15	30		
		실버산업경영과				40	40
		유아교육과	40	40	50		
		유아교육과★				90	90
		아동미술보육과		40	40	50	40
		풍수명리과(야간)	40	40	40		
		풍수명리과				60	60
	장례서비스경영과	30	40	40	77		
자 연 과 학	간 호 과 ★	80	80	80	80	80	
	작업치료과 ★	30	30	30	30	30	
	치위생과 ★	40	40	40	40	40	
	임상병리과 ★	30	30	30	30	30	
	방사선과 ★	20	20	20	20	20	
	보건에듀케어과		10	30			
	운동처방과	30	40	40			
	보건의료 행정과	보건행정전공				60	30
		노인요양재활전공					
		보건행정과					30
		애완동물관리과			40	40	
	반려동물 보건학부	애견미용전공					60
		동물간호전공					
		애견훈련전공					
		국제서양조리과			30		
		퓨전양식조리과		30			
		실용한식조리과		40	30		

	베이킹디자인과				30		
	호텔외식조리과		60				
	관광호텔조리과					80	80
	피부미용과				30		
	피부미용스파과(주간)		30	40			
	피부미용스파과(야간)		30				
	헤어디자인과				30		
	헤어미용복지과			40			
	스파테라피과				30		
	웰빙뷰티 학부	스파테라피전공					200
		피부미용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전공					
	뷰티 디자인학부	피부미용전공					80
		뷰티스타일리스트전공					
헤어디자인과						40	
웰빙테라피과						40	
장례서비스경영과						80	
예 · 체 이	실용음악과			40	40		
	음악과					40	40
	축구과				30		
	레저스포츠과					40	40
	마사과		40	40	40		
	팬시완구디자인과						30
공 학	전산사무과					40	30
	고속전기철도과				40	40	40
	자동차기계과				40		
	자동차정비튜닝과					40	40
	건축리모델링과					40	30
	다이아몬드마스터과					40	
	주얼리 디자인 계열	보석귀금속디자인과					60
		다이아몬드과					
	조선플랜트과				40	50	
	제철산업플랜트과				30		
	환경공업과					40	
	주문식 특약계열	조선기술과					197
		조선플랜트과					
		환경플랜트과					
		산업플랜트경영과					
		국제기술과					
종합군수지원과			15	30			
방산장비정비과				30			
그린산업기술과(주간)			50				
그린산업기술과(야간)			30				
합 계		700	990	1,310	1,777	1,807	

※ ★표는 3년제 임

계 열	학부(과), 전공	입 학 정 원					
		2007 학년도	2006 학년도	2005 학년도	2004 학년도	2003 학년도	
인 문 사 회	국제관광경영과	40	40				
	관광일어과	40	50				
	중국비즈니스과	30					
	중국관광비즈니스과		40				
	호텔경영과	60	60				
	항공서비스과	30	30				
	카지노과	50	40				
	국제 관광 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50		
		호텔경영전공			70		
		관광일어전공			60		
		중국관광비즈니스전공			40		
		항공서비스전공			40		
		카지노전공			40		
		외식사업,이벤트경영전공			40		
		관광레저경영전공				60	
		관광호텔경영전공				80	
		관광일어전공				60	
		중국관광비즈니스전공				40	
		항공서비스전공				40	
		카지노전공				40	
		외식사업,이벤트경영전공				40	
		관광경영전공					630
		관광영어통역전공					
		관광일어통역전공					
		관광중국어통역전공					
		관광러시아어통역전공					
		관광호텔경영전공					
	항공서비스전공						
	카지노전공						
	외식사업경영전공						
	레포츠여행설계전공						
	부동산컨설팅과	40	40				
	부동산세무과			50			
	창업경영과			50			
	비즈니스 경영학부	부동산세무컨설팅전공				40	
		창업·경영전공				60	
비즈니스 경영학부	전산세무전공					100	
	인터넷비즈니스전공						
	경영과						
경찰복지계열	경찰복지행정과	120	100				
	사회복지과						
	경찰복지행정과			80	80	80	
	유아교육과★	90	96	96	96	108	
	아동미술보육과	40	40	40	40		

계 열	학부(과), 전공	입 학 정 원					
		2007 학년도	2006 학년도	2005 학년도	2004 학년도	2003 학년도	
자 연 계 열	간 호 과 ★	80	80	66	80	80	
	작업치료과 ★	30	30	30	30	30	
	치위생과 ★	40	40	40	40		
	임상병리과 ★	30	30				
	방사선과 ★	20	20				
	보건행정과	40	40	40			
	애완동물보건관리과	60	60				
	애완동물 보건학부	애완동물미용관리전공			40		
		애완동물건강관리전공			40		
	생명보건 학부	애완동물미용관리전공				80	
		애완동물건강관리전공				40	
		병원약국정보관리전공				40	
		보건환경전공					90
		보건행정전공					
	애완동물보건관리전공						
	관광호텔조리과	100	100	120	160	200	
	뷰티미용과		40				
	미용예술과			80			
	피부미용과	40					
	뷰티 코디 네이션 학부	헤어디자인전공				80	
		피부관리전공				40	
		메이크업·네일아트전공				40	
		헤어디자인전공					180
		피부관리전공					
	메이크업·코디전공						
	친환경농업기술과	30	40	40			
	실버케어보건복지과		30				
	스포츠재활지도과		40				
	헤어디자인과	50					
	웰빙테라피과	40	40				
소자본창업 계열	영양생명과학과	110					
	장례지도과						
	풍수명리과						
기능식품컨설팅과	장례지도과	221					
	풍수명리과						
	헤어디자인창업과						
	피부관리창업과						
	웨딩컨설팅과						

계 열	학부(과), 전공		입 학 정 원				
			2007 학년도	2006 학년도	2005 학년도	2004 학년도	2003 학년도
자 연 계 열	소자본 창업학부	조리창업전공			421		
		피부관리창업전공					
		헤어디자인창업전공					
		페트샵창업전공					
		웨딩컨설팅창업전공					
		장례풍수창업전공					
		보석귀금속공예창업전공					
		웰빙장식창업전공					
		한식조리창업전공				30	
		양식조리창업전공				30	
		제과제빵창업전공				30	
		피부관리창업전공				30	
		헤어디자인창업전공				30	
		페트샵창업전공				30	
장례풍수컨설팅창업전공				30			
예 · 체 능	음 악 과		40	40	40	40	40
	경호레저스포츠과		40				
	경호 스포츠 학부	레저스포츠전공			30		
		경호사관무도전공			40		
		레저골프전공				40	
		경호무도전공				40	
		레저스포츠전공					110
		경호전공					
	팬시완구디자인과		40			30	
	애니 메이션 학부	시각·애니메이션디자인				30	
		방송영상애니메이션				30	
디자인 미술 영상학부	시각디자인문화상품전공					100	
	아동미술보육전공						
	영상미디어전공						

계 열	학부(과), 전공	입 학 정 원					
		2007 학년도	2006 학년도	2005 학년도	2004 학년도	2003 학년도	
공 학	전산사무과	30	30				
	멀티미디어과			60			
	멀티미디어 학부	게임,컨텐츠디자인전공				40	
		모바일미디어전공				40	
		인터넷부동산전공				40	
	컴퓨터 디자인 학부	웹컨텐츠개발전공					120
		인터넷응용,방송전공					
		멀티미디어전공					
	디지털 전기정보 학부	고속전기철도과	40	40	40	40	120
		전기소방시스템전공					
		정보통신전공					
		Web비서전공					
	자동차 기계학부	방송이벤트설비전공					120
		자동차정비튜닝과	40				
		자동차부품설계,CAD과		40			
		자동차정비과		40			
	토탈 디자인 학부	자동차튜닝과		40	60		85
		자동차전공				60	
		기계전공				40	
		건축리모델링과★	30	30	30		
		보석귀금속디자인과	40	40	40	40	
		토탈악세사리공예과	30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건축리모델링전공★						33	
건축·실내 디자인 학부		건축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주문식 특약계열	조선플랜트과	77				120	
	조선기술과	60					
	비파괴검사과	100					
주문식 특약학부	조선플랜트기술전공		180				
합 계		1,777	1,827	1,927 (1,913)	2,077	2,193	

※ 간호와 2005학년도 ()속 숫자는 전년도 초과모집 인원을 감한 모집정원 임

※ ★표는 3년제 임

[별표 2]<개정 2005.2.16, 2006.2.16, 2006.9.1, 2007.3.15, 2008.3.19, 2009.3.1, 2009.10.21, 2010.09.13, 2011.06.14, 2011.08.29, 2014.07.31., 2016.02.29., 2017.06.20.>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학부 및 학과
관광전문학사	호텔관광경영과, 항공관광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간호전문학사	간호과
보건전문학사	작업치료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운동처방과, 피부미용스파과
공업전문학사	고속전기철도과, 자동차기계과, 조선플랜트과, 그린산업기술과, 기계시스템과, 사출금형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체육전문학사	축구과, 골프과, 스포츠 승마과
장례경영전문학사	장례서비스경영과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카지노전문학사	카지노과
관광외식조리전문학사	국제서양조리과, 실용한식조리과, 퓨전양식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농업전문학사	마사과
군사전문학사	부사관과
경찰전문학사	경찰보안과

[별표 2-1]<신설 2017.06.20>

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학부 및 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별표 3]〈삭제 2009.3.1〉

[별표 4]〈신설 04.8.10, 개정 2008.3.19, 2009.4.1 개정 2010.05.08, 2011.03.09, 2011.10.25, 2014.04.30, 2015.05.04〉

학교기업

연번	명 칭	사업종목	연계학부(과)	연계교육 과정	주 소	비고
1	학교기업 웨딩아카데미	음식점업, 웨딩관련부대사 업	호텔외식조리과	현장실습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516	

[별표 5]〈신설 2014.04.30., 개정 2015.05.04., 2017.03.07.〉

계약학과

모집단위	정원	학위종별
사출금형과	20	공업전문학사

학 사 내 규

(개정 2017. 08. 02., 교무위원회 2017. 08. 01.)
(개정 2017. 06. 13. 교무위원회 2017. 06. 07.)
(개정 2017. 02. 03., 교무위원회 2017. 01. 25.)
(개정 2016. 11. 30., 교무위원회 2016. 11. 23.)
(개정 2016. 08. 10., 교무위원회 2016. 08. 03.)
(개정 2015. 08. 19., 교무위원회 2015. 07. 29.)
(개정 2015. 05. 04., 교무위원회 2015. 04. 24.)
(개정 2014. 12. 01., 교무위원회 2014. 11. 27.)
(개정 2014. 01. 29., 교무위원회 2014. 01. 28.)
(개정 2013. 12. 12., 교무위원회 2013. 11. 12.)
(개정 2012. 07. 24., 교무위원회 2012. 07. 20.)
(개정 2011. 08. 25., 교무위원회 2011. 08. 09.)
(개정 2010. 03. 09., 교무위원회 2010. 03. 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제2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업이수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8.6.1>

②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년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8.6.1>

제3조(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등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해당학년의 재학생과 같은 금액의 수업료 및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은 입학금을 면제한

다.<개정 2008.6.1, 개정 2010.3.9>

제4조(복학생 등록) ①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의 등록금이 휴학 학기보다 증가되어도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3.1>

②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학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한다.<개정 2009.3.1>

제5조(유급생 등록) 학점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유급자의 경우 신청학점이 1~3학점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1/6, 4~6학점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1/3, 7~9학점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업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1, 개정 2009.3.1, 개정 2010.3.9>

제6조(장애학생 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며, 신청학점이 1~3학점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4~6학점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7~9학점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1, 개정 2009.3.1>

제3장 수업관리

제1절 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① 등록을 필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매학기 개시 2주전까지 수강인원 및 강의실 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0.3.9>

③ 수강신청에서 누락된 학생과 수강 인원 조절의 결과에 따라 수강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9.3.1>

제8조(수강 신청의 절차) ① 학생은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② 학과에서는 기 신청된 수강신청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출력되는 출석부를 사용하여 학생 출석을 확인한다.<개정 2009.3.1, 2012.07.24>

③ 교과목은 일반선택,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 직업기초능력교과로 구분하여 수강신청 한다.<개정 2015.05.04.>

제9조(수강신청학점) ①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개정 2006.5.1, 개정 2009.3.1>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점이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학기 최고 24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08.6.1, 개정 2009.3.1>

제10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원을 매학기 초 2주일 내에 학과장을 통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2.07.24>

제11조(수강신청의 제한)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12조(재이수) ①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취득한 교과목 성적 등급이 C⁺ 이하인 경우는 재이수 할 수 있다.<개정 2016.11.30.>

② 삭제<2016.11.30.>

③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A^o 등급까지만 취득 가능하다.<신설 2016.11.30.>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과 기존 취득한 성적을 모두 성적증명서에 기재하고, 평균 평점에 반영한다.<신설 2016.11.30.>

제13조(성적포기) 삭제<2016.11.30.>

제14조(수강신청의 효력) 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② 교과목이 분반되어 개설된 경우에는 지정된 반에서 수강 하여야 하며 임의로 다른 반에서 수강하여 얻은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15조(특정교과목 이수 인정) ①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특정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8.6.1>

② 소속 학과에 개설되지 않는 타 학과 과목 이수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교양, 교직원관련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모든 학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09.3.1, 2012.07.24>

제16조(현장실습 교육) ①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학과에서는 의무적으로 현장실습 또는 현장체험 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며,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는 현장지도를 필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2.07.24>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3년제 학과는 총30학점, 2년제 학과는 총20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③ 재학생은 현장실습을 4주 1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체험 과목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해당 교과목과 유사한 분야에 재직 경험이 있는자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3.9., 2016.08.10.>

제17조(동일 과목의 학점인정) 복학생의 경우 복학 전 교과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학 후 교과과정 과목과 과목명은 동일하고 이수학점이 다를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09.3.1>

제18조(폐강)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 일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 할 수 있다.

제2절 수업 및 강의 계획

제19조(수업) ① 매학기 마다 각 학과장은 개설과목 및 강의담당 상황표, 담당 교수별 시수 배정표, 학과별 시간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 2012.07.24>

② 필요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원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0조(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제목 변경 2015.05.04.>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마다 강의내용, 강의방법 및 NCS기반 교과목에 대해서는 평가방법 등 이 명시된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한 후 교육한다.<개정 2015.05.04., 2017.08.02.>

② 2인 이상 교수가 담당하는 동일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는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③ 강의계획서는 매 학기 개시전에 학생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한다.<개정 2008.9.1, 2015.05.04., 2017.08.02>

제21조(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 및 강의실은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신청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6.1, 개정 2009.3.1, 개정 2010.3.9>

제22조(강의) ① 강의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실습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이론교육은 사정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반 강의를 할 수 있다.

③ 이론교육이더라도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하여 현장수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수업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 2(강의평가 등) ① 학기마다 지정된 기간에 개설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의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개설 과목에 대한 수업참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하

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3.12.12>

제23조(특별강의) 학과장은 산업체 및 학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교양 또는 전공에 대한 특별강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2.07.24>

제24조(휴 · 결강 및 보강) 교과목 담당 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 ·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히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제25조(사전보강) 행사, 실습 및 기타 사정으로 휴강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보강을 할 수 있다.

제26조(수업시간) ① 전임교원의 주 중 강의시간은 요일별 균등하게 배정한다.

② 시간강사는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30.>

③ 수업은 08:00부터 23:00까지 실시한다.

제27조(출석)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한 학기간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F’ 로 처리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③ 전항의 출석 미달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9.3.1>

제28조(미등록자의 출석처리) 본 대학에서 정한 기한내에 등록을 필한자의 등록기간내의 출석은 인정한다.<개정 2016.11.30.>

제29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경우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7.08.02>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의 의무이행과 왕복 여행기간 : 징병 검사, 예비군훈련 등.

2. 학생회활동 및 총장이 승인한 교외행사 참가.

3. 각종 시험 응시 : 자격증 시험, 채용시험 응시 등.

4.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경조에 대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 본인 : 7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일

2.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7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일

4.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2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제30조(지각 및 조퇴)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3절 교원 책임시간

제31조(교원책임시간)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 프로젝트 참여, 업무과중 등의 사유로 총장의 승인 시 책임시수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개정 2014.01.29>

③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하였을 때에는 책임시간이 적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본 대학교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아래와 같다.<신설 2014.01.29., 개정 2016.11.30.>

본부보직교수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학과장직 교수	부속·부설 기관장 학술정보원장	일반 교수	강의 전담 교수	초빙 교수	겸임 교수
6	10	10	12	12	12	6

제32조(교원책임시간 인정) 교원의 책임시간 인정시수의 산정은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3조(교외 출강) ① 교원이 타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출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외 출강은 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 대학과 산학협력체결이 맺어진 기관으로의 출강은 예외로 한다.

제34조(보직교수 교과목배정) 보직교수가 보직에서 해직되었을 때에는 보직 이전의 담당 과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35조(시간강사 위촉) ①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와 담당교수의 책임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장은 시간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학기 강의시간표 작성 이전에 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2.07.24>

③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강사료 지급) 강사료의 지급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학업성적 처리

제1절 시험

제37조(시험) 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식과 객관식을 병용할 수 있으며, NCS기반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담당교수가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5.05.04., 2017.08.02>

②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시험

가. 중간고사 : 수업한 교과목의 이수 정도를 매학기 중간에 평가하는 시험.

나. 기말고사 : 수업한 교과목의 이수 정도를 매학기 말에 평가하는 시험.

2. 수시시험: 정기시험 외에 매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예·복습 상태 평가, 세미나 평가 등을 포함함.

3. 추가시험 :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4. 재시험 : 교과목 담당 교수가 정기시험의 결과만으로 공정한 교과목 성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시험.

5. 졸업자격시험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졸업자격시험을 실시 할 수 있음.

6. NCS 기반 교과목에 대한 시험<신설 2015.05.04., 개정 2016.11.30., 2017.08.02>

가. 진단평가 : 수업 전 혹은 수업 초기에 시행되는 학습자의 자가진단적 평가로

서 수행준거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등으로 구성되며 성적에 반영하지 않음.

나. 직무수행능력평가 : 능력단위요소에서 제시한 수행준거와 지식/기술/태도를 중심으로 평가.

③ 매 학기 정기시험 및 출석은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단, NCS기반 교과목은 위 제2항 제6호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9.1., 2015.05.04., 2017.08.02>

④ 실험, 실습, 현장실습 등의 평가는 평상시 평가로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제38조(추가시험응시) ① 추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시험 신청서와 변경전·후 시험지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3.1.,2010.3.9.,2016.08.10.>

② 추가시험을 허가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7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2010.3.9.,2016.08.10.>

③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등급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고 본인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출제) 평가문제는 전체강의 내용 중에서 수업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타당한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며, 각 문제마다 미리 평가기준, 배점 등을 설정하여 객관성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제2절 성적

제40조(성적평가기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수강생 중 B학점 이상을 70% 이내, A학점 이상을 40% 이내로 한다. 단 학과특성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3.9>

② 2인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는 동일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담당교수 전원이 협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제41조(성적산출) ① 학생의 성적산출은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으로 산출한다.

② 교과목 종합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반영비율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평소학습성적 등을 80%반영하고 출석성적을 20% 반영하며, NCS기반 교과목은 출석성적 20%, 직무수행능력평가 80%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2015.05.04., 2016.11.30., 2017.08.02>

③ 전조 반영 비율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의 평가는 이론과 실기를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비율은 학과 교수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개정 2012.07.24>

제42조(성적산출근거의 보관) ① 성적산출근거가 되는 출석부 및 성적원장의 보관은 5년 동안 해당부서에서 보관하되, 그 사본은 해당 학과에서 학과장이 보관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2.07.24., 2016.11.30.>

②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 자료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이 5년 동안 보관한다.<개정 2009.3.1., 2016.11.30.>

③ 학과의 성적산출근거는 학과장이 보관한다.<개정 2017.08.02>

④ 학과장이 바뀔 경우에는 신임 학과장이 성적산출근거를 인계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제43조(인정점수 부여) ① 학교 대표 자격의 대회 참가 등,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중 어느 하나를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응시한 성적만으로 출석 및 예습·복습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무단으로 정기시험에 불응한 경우 해당 교과목 시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개정 2010.3.9>

③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 성적을 0점으로 한다.<개정 2010.3.9>

④ 부정행위로 인해 0점 처리된 교과목은 당해 계절학기 수강을 금한다.

제44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 평점 및 실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 급	평 점	실 점 수	비 고
A+	4.5	100 - 95	급 제
A0	4.0	94 - 90	급 제
B+	3.5	89 - 85	급 제
B0	3.0	84 - 80	급 제
C+	2.5	79 - 75	급 제
C0	2.0	74 - 70	급 제
D+	1.5	69 - 65	급 제
D0	1.0	64 - 60	급 제
F	0	59 이하	낙 제
S	0	70 이상	합 격
U	0	69 이하	불합격

② 평점은 각 교과목 별로 산출한다.

③ 과락으로 인하여 평점이 0점 처리 된 교과목을 계절강좌를 통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이전 평점은 무효로 하고 새로 취득한 평점을 인정한다.

제45조(평균평점) 매학기 평균평점의 산출은 이수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을 각각 곱

한 값의 합계를 총 수강학점으로 나누어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당해 학기 평균평점으로 한다.

평균평점 = (각 과목학점 × 각 과목평점)의 합계 ÷ 총 수강신청학점

제45조2(평균실점) 매학기 평균실점의 산출은 이수과목별 실점에 교과목별 학점을 각각 곱한 값의 합계를 총 수강학점으로 나누어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평균실점으로 한다.

평균실점 = (각 과목학점 × 각 과목실점)의 합계 ÷ 총 수강신청학점<신설 2017.08.02>

제46조(평가시기공고) 평가 시기는 시행 1주일 전에 평가 교과목과 일정표를 공고한다.

제47조(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동안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성적입력) 교과목 담당교수는 확정된 성적을 일정기간 내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제49조(성적통고) 매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생은 이수한 성적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한다.<개정 2009.3.1., 2016.11.30.>

제50조(학점인정)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출석실적, 부정행위, 등록여부 등을 조사확인 후 제 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제51조(성적이의 신청) ① 성적이의가 있는 학생은 매 학기말 성적공시 기간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2>

② 이의 신청을 받은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 사항을 확인하고, 성적을 확정된 후,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에게 직접 전달한다.<개정 2012.07.24>

③ 해당 학과장은 성적이의 신청서를 일괄 수합하여 1주일 내에 해당부서로 제출한다.<개정 2008.9.1, 2012.07.24>

제52조(성적정정)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 누락, 기재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시험답지, 출석부 등)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② 총장은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성적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정정된 성적은 졸업사정, 장학사정 등에 소급하여 반영 할 수 없다.

제53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교과목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

3. 수강신청 허용 학점을 초과한 교과목.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54조(성적의 포기) <삭제 2016.11.30.>

제55조(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 ①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이전에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한자는 중간평가를 치루었더라도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복학을 하는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전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②<삭제 2009.3.1>

③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3/4 이상을 출석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말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자는 수시 및 중간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제3절 특별학점인정

제56조(특별학점인정) ①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강좌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별도과정으로 본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교과목 관련 어학강좌(15주 과정)를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해당부서에 제출한 자는 각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실용영어’ 교과목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특별학점 2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③ 특별학점은 학기당 신청 학점 수에서 제외되며, 이에 관한 성적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기 평균평점 산출에는 제외한다.

제4절 학사경고 및 유급

제57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6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 경고한다.

② 학사경고에 대한 사항은 학생 및 학과장에게 통보하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개인 면담을 통하여 경고한다.<개정 2016.11.30.>

제58조(특별지도)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처분 자에게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4>

제59조(유급) ① 수업연한 동안 졸업최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유급되며, 유급자는 졸업예정 다음 학기에 미달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할 수 있다.

② 본인이 희망 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진유급 할 수

있다.<개정 2009.3.1>

제5절 전적대학 및 조기취업자 학점인정<개정 2010.3.9, 2014.12.01.>

제60조(학점인정) 재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7.08.02>

1.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 할 수 있다.
2. 편입생은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12.07.24>
3. 전문학사, 학사학위 소지자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이수과목과 관계없이 20학점을 일괄 인정하며 2, 3, 4년제 학과 모두 동일하게 졸업학점에 적용한다.<개정 2009.3.1., 2017.06.13.>
4. 학점 인정이 결정되면 개인별로 통지하여 수강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61조(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 기준은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12.01., 개정 2017.02.03.>

제5장 교과목이수 및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이수

제62조(교과목 이수) ① 학년 · 학기별 교과목의 이수는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실행한다.

②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일반강의,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구분 없이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10.3.9>

③ 학과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최소 2학점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05.04., 개정 2016.11.30.>

제63조(교양과목 이수) ① 인성교육과 기초학습을 위하여 개설된 교양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11.30.>

제64조(자격증 발급 교과목 이수) ① 실기교사, 정교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련학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 중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학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12.07.24>

②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과 유사한교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총장으로부터 기본이수과목 일치여부를 승인 받아 유사교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65조(일반선택 과목)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07.24>

제2절 교육과정

제66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과장이 안을 작성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2.07.24, 2017.08.02>

③ 전문계고등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6.1>

제67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의 개편은 2년 주기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 개편할 수 있다.

② 제출된 교육과정 개편안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개편 내용이 경미할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6.1>

제68조(교직과정 편성) ① 교직과정은 교직과목과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으로 편성한다.

②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적관리

제69조(학번관리) ① 학번은 입학년도 세 자리, 계열 번호 두 자리, 순번 세 자리로 하여 총 여덟 자리로 한다.

② 복학이나 재입학의 경우에는 입학당시 미리 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단, 전과의 경우 기 부여된 학번은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7.08.02>

③ 편입생의 학번 부여 시 입학년도는 편입학하는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의 번호와

같이 하고, 개인번호는 기존 학번의 다음부터 부여한다.

제70조(학적부 관리) 학적부는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 부서 책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람 · 복사할 수 없다.<개정 2013.12.12>

제71조(기재사항 정정) 학생의 인적사항 변동으로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원과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고 정정한다. 이때 정정자의 날인과 정정 년, 월, 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착오로 인한 기재누락 및 오기 일 경우에는 신고만으로서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7장 휴학, 복학 및 제적

제72조(휴학의 종류)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제73조(휴학기간) 휴학은 학칙 제25조에 의해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장애학생의 경우 2회에 한한다. 다만 질병, 입대휴학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3.1, 2011.08.25>

제74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은 가정사정,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는 자의 휴학을 말한다.

②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서에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에는 전문의가 발행하는 4주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4주 미만 3주 이상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③ 등록을 마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경우에는 휴학원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매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④ 신입생은 입학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질병등 기타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5조(입대휴학) ① 입대휴학은 입영 통지서 또는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자 또는 일반 휴학 중인 자가 입대휴학으로 변경하는 자의 휴학을 말한다.

② 입대휴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입영일자 1주일 전부터 입대 전일까지 입영통지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10.3.9., 2016.11.30.>

③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병무착오로 귀향한 자는 입영에서 귀향까지의 기

간이 수업일수 1/4이 넘지 않는 경우 귀향 후 즉시 해당부서에 귀향 신고를 하고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그 학기를 계속 수학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④ 입대 휴학학기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 그 학기에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개정 2009.3.1>

⑤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을 때에는 입대전일까지 입영통지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3.1., 2010.3.9., 2016.11.30.>

제76조(휴학의 취소) 휴학원을 제출한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제77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 복학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 이내에 복학원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③ 학기 개시 후 일정기일 지난 후 복학할 경우에는 그 지연일을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78조(입대 휴학자의 복학) ① 재학 중 입대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후 개시되는 1,2학기 개시일로 부터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확인 관련 서류 1통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2010.3.9., 2016.11.30.>

② 복학허용 마감일 이후에 제대하는 복학생이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8.9.1, 개정 2009.3.1>

③ 학기 개시 후 전역일로부터 복학 지연일 동안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78조2(휴학자 등에 대한 처우) ① 폐과되거나 학과명이 변경된 휴학자 등이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학과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이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1.08.25., 개정 2017.08.02>

② 폐과되거나 학과명이 변경된 휴학자 등이 타 대학으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편입학 자격조건을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신설 2011.08.25>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총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08.25>

제79조(휴학연기) ① 휴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② 휴학연기 1회는 휴학 1회로 본다. 단, 당해학기 내에 질병 또는 입대로 인하여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9.3.1>

제80조(자진퇴학) 자진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2.07.24>

제81조(제적) ①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이상이 초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 한 자.<개정 2009.3.1>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08.10.>
4. 이중 학적을 가진 자.

② 제적된 자에게 제적사유를 명시하여 본인, 보호자 및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4>

제8장 전 과<개정 2012.07.24>

제82조(범위) ① 일반 학과 변경 시 허용범위 및 비율은 학과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 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8.9.1, 개정2009.3.1, 2012.07.24>

② 의료관련 학과와 교원양성관련 학과의 전과 범위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7.24>

제83조(규제자) 편입생, 산업체위탁교육생 자격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를 허락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2.07.24>

제84조(시기 및 절차)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에 전·출입 학과장을 경유한 전과원서 및 기타 증빙서류(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등)를 해당부서에 제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2012.07.24>

제85조(학점인정) ① 교과목이 전과 전·후가 동일 할 경우에는 기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를 경우에는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2.07.24>

② 전과 전·후의 수업년한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전과 후의 학과의 수업년한에 따른다.<개

정 2012.07.24>

제86조(지원자 초과시 선발) 지원자가 초과 할 경우에는 평균평점, 총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9장 졸업요건과 수료학점

제87조(졸업요건) 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3년제는 3년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한자는 편입학한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3.9>

②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80학점 (3년제 학과는 120학점, 4년제 학과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6.13.>

③ 해당학과의 전공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별 개설한 교육과정 중 전공교과목으로 졸업 학점의 5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3.9, 2012.07.24>

제88조(수료학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각 학년별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2. 2학년 수료 : 80학점
3. 3학년 수료 : 120학점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제10장 계절수업

제89조(개설) ① 계절수업은 총장이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1주전에 개설일자, 개설교과목, 수강요령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2>

③ 계절수업의 개설과목은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0조(수강학점) 계절수업의 신청학점은 학년별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

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신청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6.08.10.>

제91조(성적평가 및 처리)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하되, 해당학기의 평균평점 산출에는 제외한다.

제92조(수강료)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08.10.>

제11장 재입학 및 편입학

제1절 재입학

제93조(재입학) ① 미등록, 미복학, 자퇴 및 기타 제적 등으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하되, 제적된 날로부터 1학기이상 경과 후 허가한다.<개정 2012.07.24>

③ 폐과되거나 학과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2.07.24>

④ 재입학 시기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며 재입학한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4>

제94조(재입학 절차)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②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1>

③ 재입학 신청인원이 모집단위별 여석을 초과 할 경우에는 등록횟수가 많은 자, 통산 평균평점 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2절 편입학

제95조(편입학) ① 편입학전형은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2학년 1학기에 허가 한다.

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외국인학생은 정원 제한 없이 매학년도 매학기에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③ 대학 통폐합에 의하여 본 대학으로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하여 실시하며 학년 제한 없이 허가 한다.

④ 편입학전형은 서류심사, 전적대학 성적 및 기타 전형자료를 활용한다.

⑤ 편입학한 자는 해당 학과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4>

제96조(학점인정) 편입학자의 전적대학 교과목 학점을 우리대학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과목 구분 없이 학기별 20학점을 인정한다.

제97조(교과목 재이수) 편입학한 학년 이후에 개설되는 교과목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재이수 할 수 있다.

제98조(편입허가 취소) 편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후일 그의 학력이나 자격증 및 이력사항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제12장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99조(위탁생) 법령에 규정한 위탁생으로서 교과부장관의 위탁 추천이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0조(위탁생의 제적)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단, 구조조정, 폐업, 타 산업체로의 전직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임하였을 경우는 학적을 보유한다.

제101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학생으로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평가한 후 정원 외의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협정에 의한 외국인 위탁학생이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할 경우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102조(준용) 외국인 학생과 위탁생에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장 제증명서 발급

제103조(증명서의 종류) 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국문 또는 영문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졸업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졸업예정증명서
7. 기타 학업에 관계되는 증명서

제104조(증명서의 발급) ① 증명서 발급은 자동증명발급기 또는 해당부서에서 발급하고, 원격지에서는 인터넷, FAX민원으로 발급 가능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② 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은 학적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를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105조(수수료 정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담당자가 매주 결산하여 해당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회계관리 부서에 입금하고 증명발급대장을 보관한다.<개정 2009.3.1, 개정 2010.3.9>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0조 2는 1986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적용범위) 제26조 1989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5, 16장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산업체위탁교육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교육과정 개선에 따른 조치) 및 제33조(졸업판정기준)의 폐지도 불구하고 1998학년도까지의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변경일 이전에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변경일 이전에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